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455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1)에 따라 서울시(이하 “시”)의 지역개발

1)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시 출연금과 지역개발채권<sup>2)</sup>의 발행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시는 2회에 걸쳐 채권발행과 용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발행된 채권과 용자모두 상환과 회수가 완료된 상태임.

####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

○ 채권발행 및 용자현황(당시 발행이율 2.5%, 용자이율 2.6%)

- 채권발행 : 2회(2,991억원) : '06년 1,489억원, '08년 1,502억원

→ 상환조건인 7년 만기후 '13년 1,759억원, '15년 1,774억원 상환완료

- 용자 : 2회(2,942억원) : '07년 도기본 1,500억원, '08년 sh공사 1,442억원

→ 용자조건에 따른 만기도래인 '13년 1,736억원, '15년 1,705억원 회수완료

-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현재 현금성자산(2억 7천 5백만원), 미수수익(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49억원) 등 부채없이 51억 8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기 발행된 채권 상환이 완료되고 용자도 모두 회수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시는 채권보유자들의 환매권리(상환일로부터 5년) 보장과 향후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방공기업 사업 시행에 대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안 제1조 및 제2조 등)

- 안 제1조와 제2조 등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근거를 정하였음<sup>3)</sup>.
- 지금까지 기금의 정의를 정한 지방기금법 제2조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기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던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공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08년 이후 도시철도공채만 발행

3) 시는 현재 기타특별회계 9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운영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을 설치근거로 하였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 정부는 법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권고<sup>4)</sup>를 통해 지역개발을 포함한 특정 행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등 다른 기금과 성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다른 기금과 같이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을 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하는 지방기금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을 시행시기로 정했으나,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법의 전면개정 검토를 이유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정비에 대한 입장을 9월까지도 정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정리된 후 지역개발기금 설치와 운용을 목전에 앞둔 11월에야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행정자치부의 안일한 행정이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시는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련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적절함.

#### 라. 지역개발기금 설치에 따른 정비 사항(안 제8조, 제13조 등)

- 안 제8조와 제13조 등은 지역개발채권 관련 규정과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관리공무원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에 따른 각종 정비사항을 정하였음.
- 기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위원회 남설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지역개발채권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 특히,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기금법 규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등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였음.

4)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정비 관련 안내(행정자치부-4433호) - 2016년 9월 2일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적정한 자금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마. 기타사항**

- 시는 조례안의 제출에 앞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및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기금의 용자계획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 ③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다.
- ④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시금고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매입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 제3조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다)를 중복하여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해당 연도 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1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

무에 대하여 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8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해당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재정관리담당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